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 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정문화유산의 현상 변경 행위 후 보고 의무화 〉
■ 진중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871호)

2025. 11.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지정문화유산의 현상 변경 행위 후 보고 의무화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진중오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9. 10.

다. 회 부 일 : 2025. 9.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가유산청장이나 시·도지사 등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허가 시 지정문화유산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도 보고를 하지 아니하면 허가권자가 이를 알기 어렵고, 문제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도 시간이 지난 후 발견되면 문화유산을 원상태로 보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행위 완료 후 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허가관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문화유산의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 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6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지정문화유산의 현상 변경 행위 후 보고 의무화

가. 개정안 요지

- 개정안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 변경 행위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행위를 완료한 뒤 해당 허가관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6항 신설 등).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5조(허가사항) ① ~ ⑤ (생략) <u><신설></u>	제35조(허가사항)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제47조(임시지정문화유산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임시지정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하여는 제35조 제1항, 제37조, 제39조, 제40조제1항(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한정한다), 제40조제2항, 제42조제1항 제1호·제3호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제74조(준용규정) ① (생략)

② 시·도지정문화유산과 문화유산자료의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1항·제4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 제49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시·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시·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제103조(과태료) ①·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제47조(임시지정문화유산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

-----제35조

제1항·제6항-----

-,

제74조(준용규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35조제1

항·제6항-----

-----.

-----.

제103조(과태료)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

1. 제35조제6항(제47조와 제74조

	<u>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u>
<u>1. ~ 8.</u> (생략)	<u>2. ~ 9.</u> (현행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국가지정문화유산을 탁본 또는 영인(影印: 원본을 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는 것)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장이 아니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를 받아야 함.
- 그런데 위 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경우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면 허가권자가 알기 어렵고, 문제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적정 시간이 지나 원상복구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특히 한 드라마 촬영팀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안동 병산서원에서 소품 설치를 위해 건축물 기둥에 못을 박아 기소유에 처분을 받은 사례처럼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 변경 행위 등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해당 행위가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 변경,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의 사항을 국가유산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¹⁾.
- 개정안은 문화유산의 현상 변경이나 훼손 행위 후 해당 사실을 허가관청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상 행위 완료 후 보고 의무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문화유산 훼손 사실의 인지 및 대응 지연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문화유산 훼손 시 신속하고 적절한 복구 및 보존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과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1) 개정안은 임시지정문화유산의 보호, 시·도지정문화유산과 문화유산자료의 관리에 관해서도 현상 변경 행위 후 보고 의무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보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준법의식을 높여 훼손 방지 효과를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현행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로 하여금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허가(변경허가를 포함)를 받고 그 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등에는 그 사실과 경위를 그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²⁾, 개정안의 취지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신고 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유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5.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6.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8. 제39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문화유산을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에 관하여 법 제4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지정문화유산에 관하여 법 제4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단, 개정안의 보고 주체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이고, 현행법 제40조의 신고 주체는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한편, 전라북도와 강원도가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로 개편되고 해당 자치도 안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여 개정안 시행 시 업무의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별자치도지사가 포함된 조항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하도록 할 필요가 있겠음.
- 국가유산청은 현행법 제40조에 따라 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또는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관련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15일 이내)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바, 이미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79